

별첨1. 기관추천 특별공급(봉담 프라이드시티)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 급 명 : 봉담 프라이드시티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A-1BL
- 공급규모 : 지하 4층 ~ 지상 35층 아파트 11개동 총 1,701세대
 - 59㎡ : 466세대, 72㎡ : 671세대, 84㎡ : 562세대, 105㎡ : 2세대
-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세대

주택형(㎡)	59A	59A1	59B	59C	59C1	59D	72A	72B	72C
세대수(예비)	2(6)	1(3)	0(0)	1(3)	0(0)	0(0)	0(0)	2(6)	2(6)
주택형(㎡)	72C1	72C2	72D	84A	84B	84C	합계		
세대수(예비)	2(6)	0(0)	1(3)	4(12)	3(9)	0(0)	18(54)		

■ 공급일정

구분	예정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1. 06. 04(금)예정	■ 당사 홈페이지(http://bd-pridecity.com)
건본주택 개관	2021. 06월 중	■ 사이버건본주택으로 대체
청약접수	2021. 06. 14(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은행창구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일	2021. 06. 23(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
 - 청약통장 가입 요건(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신 분
 - ③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
-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입니다.
-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 건본주택 관람은 불가하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모집공고일 이후 분양관련 운영사항 및 청약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구성원의 의미

-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의하여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특별공급 등)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여야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III 유의사항 안내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및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주택 구성원과 관련된 것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시 재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IV



별첨2.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양식

타입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비고